

## 2021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II. 제 안 사 유

-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III. 추가경정예산(안)

#### 1. 총 괄

#####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320,295	344,007	△23,712	△6.9%	
일	반 회 계	63,682	84,394	△20,712	△24.5%	
특 별 회 계	소	계	256,613	259,613	△3,000	△1.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13	8,113	△3,000	△37.0%	
	도시개발특별회계	251,300	251,500	-	-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404,019	1,361,839	42,180	3.1%
일반회계		465,614	400,844	64,770	16.2%
특별회계	소 계	938,404	960,994	△22,590	△2.4%
	교통사업특별회계	17,300	17,300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4,468	47,468	△3,000	△6.3%
	도시개발특별회계	876,636	896,226	△19,590	△2.2%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24,063	44,775	△20,712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24,063	44,775	△20,71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 추진 정책 반영을 위한 감추경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5,113	8,113	△3,0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13	8,113	△3,000	사업비 정산을 통한 일부 국비 미교부로 감추경

4) 도시개발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263,853	199,083	64,770		
계속사업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60	△60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에 따른 국외교류 업무 중단 및 국외업무 여비 연내 집행 어려움으로 감추경	p. 765
계속사업	재난관리기금 적립	263,853	199,023	64,830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위한 추가 재정 소요	p. 769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x5,113) 41,856	(x8,113) 44,856	(x△3,000) △3,000		
계속사업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x5,113) 41,856	(x8,113) 44,856	(x△3,000) △3,000	'21년 사업완료 예정으로 사업(국비) 정산에 따른 국비 일부 감액	p. 781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80,466	100,056	△19,590		
계속사업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69,744	79,744	△10,000	사업시행자와의 협상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미반영분 감추경	p. 772
계속사업	양녕로~신림로 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	-	200	△20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로 선정되어 기확보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감추경	p. 777
계속사업	성산대교 성능개선	10,400	14,400	△4,000	우기철 하천점용 및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감추경	p. 786
계속사업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	-	5,000	△5,000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한 광역보행체계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재검토를 위한 공사 일시정지로 감추경	p. 791
계속사업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공사	322	712	△390	기본설계 용역 발주 지연에 따라 '21.12월 기본설계 용역 완료 예정으로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 발주 어려워 실시설계비 감추경	p. 796

## IV. 검토의견

### 1. 개 요

#### 1) 일반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24.5% 감소한 636억원 82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16.2% 증가한 4,656억원 14백만원

####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과 동일

####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대비 37.0% 감소한 51억 13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6.3% 감소한 444억 68백만원

####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한 8,766억 36백만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조 7,858억원) 증가한 46조 6,481억원이며,
- 추경재원은 기금 등 가용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함.

- 한편 예산 투입 주요 분야는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 등 이며,
- 이 중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회 1건의 증액사업에 648억 3천만원과 7건의 감액사업에 226억 5천만원을 편성함.
- 안전총괄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유일한 증액사업인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목적에 부합한다 할 수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감액사업은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한 조정이라 하겠음.

## 2. 분야별 검토 의견

### 가. 세입 예산안

#### (1) 일반회계

- 2021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47억 75백만원 대비 207억 12백만원이 감소한 240억 6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안 (A+B)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44,775	△20,712	24,063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44,775	△20,712	24,06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 추진 정책 반영을 위한 감추경

-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1)’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당해연도 12개월분(기존 납입자에 대한 환급액 포함)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준 결과에 따른 것임.

#### 1) 공유재산 임대료+ 광고·부대수입

##### - 임대료 부과기준

- 일반입찰 : (첫째년도) 입찰가, (둘째년도 이후) 해당연도 재산가액×입찰당시 대부료/입찰당시 재산가액
- 수의계약 : 해당연도 재산가액×상가별 대부요율
- 공유(일반)재산의 위·수탁 대부 : 일반입찰에 의한 낙찰가

##### - 광고·부대수입 부과기준

- 최고가 입찰에 따른 낙찰가(※예정가액:사용료 원가조사 결과 반영)

-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3월 31일 중앙정부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sup>2)</sup>을 단행함에 따라 감경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이를 근거로 지난 해 제3회 추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경감을 위해 대부료를 감면해 준 바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대부료 수입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해준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짐.

##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 없음

##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21년 말 준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에서 기

2)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교부된 국고보조금 중 정산 반납분(30억원)을 당해연도 교부 예정 금액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교부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81억 13백만원) 중 30억 원을 정산 반납분과의 상계처리를 통해 미교부받게 됨에 따른 감액조치임.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안 (A+B)	사 유
장	관	항	목				
총 계				8,113	△3,000	5,113	
보조금	국고보 조금등	국고보 조금등	국가균 형발전 특별회 계보조 금	8,113	△3,000	5,113	사업비 정산을 통한 일부 국비 미교부로 감추경

(4) 도시개발특별회계 : 해당 없음

## 나. 세출 예산안

### (1) 일반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사업에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에서 648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안 (A+B)	사 유
총 계			199,083	64,770	263,853	
1	안전 총괄과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0	△60	-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에 따른 국외교류 업무 중단 및 국외업무 여비 연내 집행 어려움으로 감추경
2	안전 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적립	199,023	64,830	263,853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위한 추가 재정 소요

#### 1)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사업별설명서 p.765)

- 동 사업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 선진사례 벤치마킹, 대도시간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외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6천만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0	(x-) 60,000	(x-) -60,000
국외업무여비	(x-) 0	(x-) 60,000	(x-) -60,000

- '21년 예산 편성 당시인 지난 해 하반기에만 하더라도 금년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확대로 동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편성했으나
-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감염 등으로 인해 금년 코로나-19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어져 국외교류 업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임.
- 다만,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외교류 업무 추진 불가로 인해 그간 누적해왔던 교류 연속성이 저해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비대면 교류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 재난관리기금 적립

- 동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sup>3)</sup>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반회계

3)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에서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1,990억 23백만원 대비 648억 3천만원(32.6%) 증가한 2,638억 5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63,853,000	(x-) 199,023,000	(x-) 64,830,000
기금전출금	(x-) 263,853,000	(x-) 199,023,000	(x-) 64,830,000

○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시·구 생활치료센터를 31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하는데 예상되는 소요인건비(의료 및 행정 인력), 설치·철거비, 운영비 등의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임.

[표] 예산 부족액 : 64,830백만원<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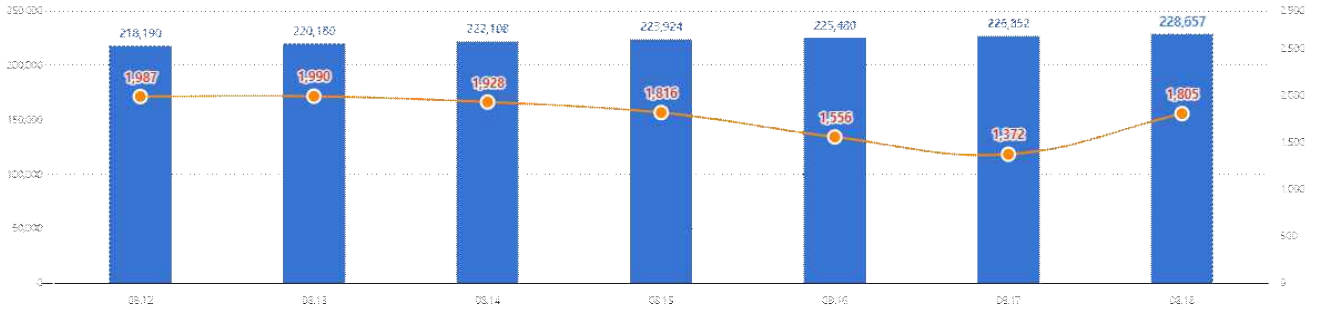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액 (1~4분기)	기 확보 예산			부족액
		계	국 비	시 비	
계	227,218	162,388	33,220	129,168	64,830
시센터	102,286	88,302	7,000	81,302	13,984
구센터	124,932	74,086	26,220	47,866	50,846

○ '21.7월 코로나-19 4차 재확산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연말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따른 조치로, 지난 8월 10일 하루 확진자수(2021명)가 2,000명을 넘은 후 연일 2,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여겨짐.

4) <산출 방법>

- ▶ 운영부서 및 자치구에 소요액 수요조사(1~6월 집행액, 7~12월 추정액 기준)
- ▶ 시생치 추가 2개소의 경우, 최근 개소한 남대문 생치(312병상) 소요 비용 기준으로 작성



[그림]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현황(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참고로, 지난 6월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 세출예산을 531억원 증액편성한 바 있음.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에서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안 (A+B)	사 유
합 계			(x8,113) 44,856	(x△3,000) △3,000	(x5,113) 41,856	
1	도로 계획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 의정부시계) 확장	(x8,113) 44,856	(x△3,000) △3,000	(x5,113) 41,856	'21년 사업완료 예정으로 사업(국비) 정산에 따른 국비 일부 감액

- 동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낙천교부터 의정부시계 구간을 확장(4차로→6차로)하려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는데, 앞선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세입예산 감추경 편성과 연동되어 세출예산 역시 감추경하는 것임.
- 당초 서울시는 202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81억 13백만원과는 별개로 2019회계연도에 교부받았다가 불용되어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 30억원을 2022회계연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21회계연도 교부해야 할 국고보조금(81억 13백만원)에서 30억원을 차감하고 교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총 5건에 195억 9천만원을 감추경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증감(B)	추경예산안(A+B)	사 유
합 계			100,056	△19,590	80,466	
1	도로 계획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79,744	△10,000	69,744	사업시행자와의 협상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미반영분 감추경

2	도로 계획과	양녕로~신림로 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	200	△200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로 선정되어 기획보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감추경
3	교량 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14,400	△4,000	10,400	우기철 하천점용 및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감추경
4	교량 안전과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	5,000	△5,000	-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한 광역보행체계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재검토를 위한 공사 일시정지로 감추경
5	교량 안전과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공사	712	△390	322	기본설계 용역 발주 지연에 따라 21.12월 기본설계 용역 완료 예정으로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 발주 어려워 실시설계비 감추경

### 1)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사업별설명서 p.772)

- 동 사업은 서울시 서남부지역의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장 10.33km,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소형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당해 연도 건설보조금으로 편성했던 기정예산 797억 44백만원 대비 100억원(12.5%) 감소한 697억 4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공기정화시설 공사비(△68억원), 공기연장 간접비(△19억원) 정산과 총사업비 관련 협상결과(△35억원)에 따른 122억원 감액과 바로녹색<sup>5)</sup> 및 사전약정 통행료 결제시스템 추가 도입에 따른 22억원 증액 등에 기인한 것임.

5) 바로녹색결제 : 사전 등록된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미리 지불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

[표] '21년 건설보조금 변경내역

(단위 : 억원, 경상가)

구 분	21년 예산(①)	최초통행료	감추경(②)	비고(②-①)
합 계	797	730	697	△100
- 잔여 건설보조금	127	126	126	△1
- 추가 건설보조금	670	604	571	△100
공기정화시설	576	514	508	△68
공사기간 연장	60	67	40	△20
운영설비 등	-	22	22	22
실시계획 승인	35	-	-	△35
차선도색 등	-	1	1	1

- 이번 조정은 금년 6월 결정된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에 반영된 총사업비 중 재정지원금에 대해 준공 전 최종 정산을 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 당해연도 기정예산은 잔여 건설보조금 127억원과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공기정화시설 추가 공사비 등 670억원을 반영하여 79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된 공기정화시설과 관련한 공사단가와 공사비 적용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였기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다가 실제 공사가 이뤄진 후,
- 외부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법률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21.7월)한 결과, 68억원의 삭감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함.
- 적용 실적이 많지 않은 공기정화시설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확한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일부 공감



할만하다 하겠으나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원가분석 이후 공사비가 68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 주먹구구식의 공사비 산정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공사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2) 양녕로~신림로 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별설명서 p.777)

- 동 사업은 양녕로부터 신림로 간 도로를 개설하여 남부순환로 교통량을 분산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타당성조사를 위해 편성했던 용역비 2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0	(x-) 200,000	(x-) -200,000
시설비	(x-) 0	(x-) 200,000	(x-) -200,000

- 이는 동 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 과정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과제로 선정(재정균형발전담당관-3595, '21.4.1.) 되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으로 집행됨에 따른 것임.

- 참고로, 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범위 내에서 자체 타당성조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됨에 따라 예산 편성 후 선정('21.3월)된 과제에 해당함.

### 3)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별설명서 p.786)

- 동 사업은 1980년에 건설되어 노후화된 2등급(DB-18)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DB-24)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내구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44억원 대비 40억원(27.7%)이 감소한 10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0,400,000	(x-) 14,400,000	(x-) -4,000,000
시설비	(x-) 9,400,000	(x-) 13,400,000	(x-) -4,000,000
감리비	(x-) 1,000,000	(x-) 1,000,000	(x-) 0

-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과정 중에 서울시 타 사업(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1공구)<sup>6)</sup>의 하천점용 완료

6)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1공구):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21. 6. 30일에 만료하였으나 '21.7.15일 준공되어 8월 중으로 하천점용 완료보고 예정임.

보고 지연으로 인해 신규허가가 중단되었고 우기철 ('21.05.15~'21.10.15) 하천점용공사 시행불가로 공사기간 변경을 요청해옴에 따라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교설치비 4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서울시가 동 사업과 별개로 시행중인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기간 만료일('21.6.30)을 준수하지 못해 동 사업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시는 하천점용 허가기간 위반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과 시정이 필요해 보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두 사업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 양 기관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4)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

(사업별설명서 p.791)

- 동 사업은 한강대교(남단) 아치교 교각을 활용한 공중보행교(B=8m, L=50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 시행

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 50억원 전액(전년도 명시이월액 69억원  
별개)을 감액 편성함.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0	(x-) 5,000,000	(x-) -5,000,000
시설비	(x-) 0	(x-) 4,663,000	(x-) -4,663,000
감리비	(x-) 0	(x-) 325,000	(x-) -325,000
시설부대비	(x-) 0	(x-) 12,000	(x-) -12,000

- ‘백년다리 조성사업’은 ‘19년 3월 추진계획 수립 이후 사업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설계(’20.12월)와 공사 계약(’21.5.7)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당해연도에 착공하고자 준비 중이었으나,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 추진경위

- ‘19.03.08. : 백년다리 조성 추진계획 수립
  - ’21.6.개통, 한강대교 재생을 통한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관광 명소화
- ’19. 5.~9. : 국제현상설계공모(’19.5.~7.), 설계용역 착수(’19.9.20.)
- ’19.10.01. : 업무이관(도시재생실: 현상공모 및 계약 → 안전총괄실: 설계 및 시공)
- ’19.10.25. : 백년다리 조성 타당성 대토론회(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관)
- ’19.11.25. : ‘20년 예산 조건부 승인 (제290회 정례회)
  -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절차 이행 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 ’20. 1.~6. : 공론화 추진 및 안전성 검증
  - ‘20년 예산 조건부 승인(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 등 사후절차 진행 조건)
- ’20.09.10. : 한강대교(구교) 등록문화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75호)
- ’20.12.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1. 1.~3. : 공사발주 전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위원회)
- '21. 5. 7. : 공사 계약
- '21. 6. 15. :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계약
- '21. 8. : 공사착공 준비(현장사무실 임대, 각종 인허가 신청, 자재발주 준비 등)
- '21. 8.10 : 공사 일시정지 요청 (부시장 방침)
  - 공사 일시정지('21.8.21.~'22.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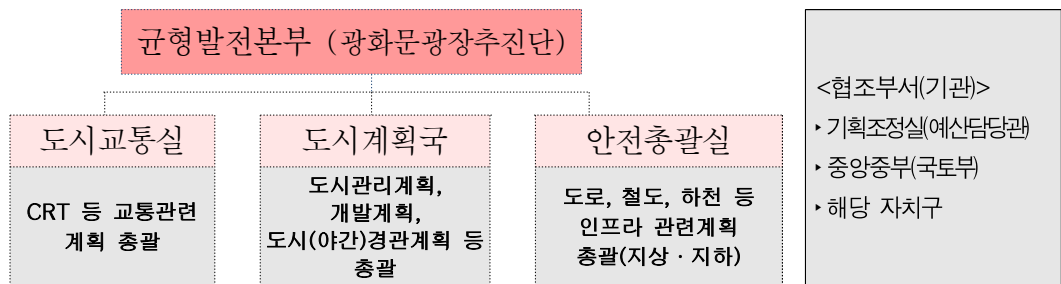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구조도(안)



- 공중보행교의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1년 8월부터 시가 추진중인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노들섬 보행 접근성 개선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22년 8월 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공사를 중지('21.8.21.~'22.8.31.)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임.
- 이처럼 서울시가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개별 시행중인 보행관련 사업들을 연계·보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광역 보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 (광화문광장추진단)**

- 주요내용 : 공간활용 종합구상, 보행, 광장네트워크 계획 수립, 노들섬·한강일대 등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기 간: 2021. 8. ~ 2022. 8.
- 소요비용: 5억 원 ※'21년 7월 2일 추경 의결, 현재 입찰공고 중
- 구 간: 광화문~용산~한강 (약7km)
- 추진체계: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TF(안)



※ 필요시 관련 타 실·국 추가적 참여 검토(푸른도시국, 주택본부 등)

- 동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및 설계 당시부터 미관 및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고 이로 인해 서울시가 약 6개월간('21.1~6)이나 공론화 추진 및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공사계약 까지 체결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재검토를 위한 공사 중지는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사료됨.
-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현재까지 설계공모(38백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15억원), 공론화(86백만원)로 16억 24백만원이 투입되었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사 중지로 인해 공사계약 이후 시공사 투입경비 실비보상(7억원 추정)과 공사지연배상금(12개월 정지 시 1억 73백만원 추정) 등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동 사업의 당해연도 본예산 50억원과 별개로 '20년 명시이월액 69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sup>7)</sup>'에서 이월액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바,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금회 감추경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적 측면에서의 낭비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의 이 같은 사업추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을 통해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미관이나 안전성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5)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공사 (사업별설명서 p.796)

- 동 사업은 기존 서소문고가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당초 7억 1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기본설계가 '21.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당해연도 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설계 및 설계감

7) 이월예산의 운영: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p.164)

리비 3억 9천만원을 감액한 3억 22백만원만 편성한 것임.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22,297	(x-) 712,000	(x-) -389,703
시설비	(x-) 293,528	(x-) 578,300	(x-) -284,772
감리비	(x-) 28,769	(x-) 133,700	(x-) -104,931

- 이는 용역 발주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 의욕만 앞세운 다소 무리한 예산 편성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